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 -
-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목표로 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 인구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구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시민사회·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는 소아응급 전문의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야간·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전국 148개소까지 늘린 바 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소아 심야진료 가산(2023년 11월~),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수가 인상(2023년 11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예산) 지원(2024년 1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응급의료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이 가지고 있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하였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소아 진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 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 환자의 질병,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5. 7.) 법률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오성일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윤민수	044-202-227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전부개정)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370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진	044-202-3690
	응급의료법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2-2550
		응급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044-202-2556
	의료법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성창현	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동빈	044-202-2402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p>「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명) 인구전략 기본법 ▶ (목적) `저출생, `고령화,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 (인구정책 기본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시행, `사회·경제적 구조개혁 시책 추진,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포용적인 가족정책 수립, `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모자 보건의 증진, `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경제적 부담의 경감, `고령사회 시책 수립, `세대 간 통합 증진,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사회보장 지속 가능성 제고,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노후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노후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 교육과 정보화 지원, `노후설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인구의 국가간 이동 지원, `인구교육 활성화 ▶ (위원회 등) ^{명칭}인구전략위원회(인구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위원장 ^{대통령}, 규모 40인 이내(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위원 구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비서실 인구전략 업무, 사회정책 업무 보좌 수석 비서관 각 1명,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대표(시·도 또는 시·군·구), ^{간사}보건복지부장관과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사무기구 설치, 인구정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인구정책 책임관 지정 ▶ (예산 관련) ^{주체}인구전략위원회, ^{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 ^{권한}예산 투자 방향·우선 순위를 관계부처와 사전협의→기획처에 의견 제출(기획처는 위원회 의견 존중), ^{정보전산망}구축·운영 가능 	<p>공포 후 3개월</p> <p>다만,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과 관련된 내용은 2027. 1. 1.</p>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계획) 명칭인구전략기본계획, 수립주체위원회, 협의대상관계부처·지자체, 수립주기5년, 포함 필요 사항·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이전 기본계획 분석·평가, `장래인구구조 변동 예측 및 경제·사회적 영향, `사회·경제구조 개혁 정책 추진과제, `적응정책 추진과제, `결혼·임신·출산·양육 환경조성 추진과제,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추진과제, 국내 인구유입 및 인구교육 관련 추진과제, `기간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예산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 투자방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확정절차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 (조사·분석·평가) 주체위원회, 대상인구정책, 주기매년, 내용조사·분석·평가, 후속조치·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해야 함, `위원회는 평가 등의 결과 추진실적 미흡 또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축소·폐지 등 정책조정 및 예산 조정 권고 가능,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 전문조사·연구기관설치 또는 관련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2	<p style="text-align: center;">「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주체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공포 후 6개월
3	<p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